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- '90. 1. 13. 특허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적용조문을 개정 조례조문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

(특허법제17조 및 동법 제18조 →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)

첨 부

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”을 “제39조 및 제40조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. 이와 같다.)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,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특허법 제 39조 및 제40조의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